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60212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602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소5623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소562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정형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7. 2. 피고와 사이에, 감압치료기(Spiral Max-D Smart,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 1대를 3,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계약금 35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의 병원에 납품 및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가 위 의료기기의 사용방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위 의료기기가 매매계약 전 보내준 동영상 시연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0. 이후 위 의료기기를 철거하였고, 같은 달 15.경 원고에게 운송비 140만원과 납품 후 중고 처리됨에 따른 피해금액 500만원(감가상각) 합계 64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20. 7. 16.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의 반품요청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철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2)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보내준 제품 설명 동영상은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MAX-D' 모델이었던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MAX-D Smart' 모델에 대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의 전제가 된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MAX-D Smart' 모델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된 물품이 애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된 기능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③ 물품 공급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행지체, 이행거절,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계약금 3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합의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갑 제8호증의 영상,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에게 메일로 보내준 제품 설명 동영상은 'MAX-D' 모델의 기능에 대한 동영상인 사실, 그런데 'MAX-D' 모델이나 'MAX-D Smart' 모델 모두 디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파이럴(spiral) 운동을 통한 감압치료를 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고 그 주요 기능이 동일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MAX-D' 모델 및 'MAX-D Smart' 모델의 제품안내서를 모두 제공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역시 제품 설명 동영상은 'MAX-D' 모델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MAX-D Smart' 모델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MAX-D Smart' 모델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앞서 본 동영상 또는 제품안내서에 기재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거절,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판사 이은명